



새 법령

new laws
and
ordinances



학교보건법

[시행 2019. 7. 3.] [법률 제16304호,
2019. 4. 2.,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성장기의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해 말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는 등 학교에서의 실내 공기 질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이와 함께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등의 참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생점검 실시와 위생점검 결과·보완 조치의 공개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실내 공기 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

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보완 조치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며,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공기의 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유치원 및 초·중·고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제4조제2항 후단 신설).
- 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제4조제6항).

다. 학교의 장은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제4조의2 신설).

라.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제4조3 신설, 제18조).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7호, 2019. 4. 2.,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표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국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하역사,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현황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만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은 동 법률의 적용대

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역시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가 해당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역사의 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또한 열악한 실내공기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어린이 놀이시설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추가하도록 하고,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이외에도, 열악한 실내공기질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보존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함(제3조).

나.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4조의 7 등).

다.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함(제5조제2항).

라.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9조의2 등).

마. 환경부장관이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9조의4 및 제9조의5 신설).

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기록한 내역의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제12조제1항).

사.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제13조제7항).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6호, 2019. 4. 2.,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현행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대신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 제도를 폐지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대기오염저감제도의 적용범위 등을 정비하며, 저공해자동차 정의를 자동차 배출가스허용기준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하고, 저공해차 의무보급제도 도입 등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일

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 등을 함께 규정함(제2조제16호, 제46조 및 제48조).

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기환경기준 초과 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함(현행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삭제).

다.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제도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에 적용함(제44조 및 제45조).

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함(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7까지 신설).

마.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수시검사 관련 업무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관련 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제60조의2제6항 및 제60조의4 신설).

바.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적용함(제63조).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2019. 3. 26.,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는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대책 수립에 대한 국민 여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지 않아 미세먼지 관련 재난 관리 수립·실행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사회재난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영, 중앙대책본부 등의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국가 등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 3. 26.] [법률 제16300호, 2019. 3. 26.,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및 농산어촌 지역 등 종전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한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이미 일몰된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과정은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영구히 보장하고, 2019년 2월 28일에 일몰된 종전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학교 과정을 허용하는 조항을 다시 규정하여 그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업일 중 고등학교,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 대해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제8조제2항).

나.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제16조제4호 신설).

다. 안 제8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학교 과정의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규정함(부칙 제2조).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67호, 2019. 1. 15.,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환경보전 뿐 아니라 환경적 혜택과 부담의 공평한 분배,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 보장, 환경오염 피해 구제의 공정성 확보 등의 환경정의 실현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환경정의를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명시하고, 지구환경상 위해의 대표 사례로써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기본이념 등의 규정에 명시하며,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환경정책 수립 시 화학물질의 관리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또한 환경기준은 국민의 생명 및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환경부가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환경기준 및 설정근거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 중 지구환경상 위해의 예시로 기후변화를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제2조).

나.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제6조의2 신설).

다. 환경부장관이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환경기준 및 그 설정근거를 공표하도록 함(제12조의2 신설).

라. 환경부장관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환경기준을 평가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2조의3 신설).

마.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시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 및 대책, 화학물질

의 관리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제15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상태 조사·평가 항목에 기후변화를 명시함(제22조제1항제4호).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74호, 2019. 1. 15.,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위협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은 오래전부터 국정감사 및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되어 왔음. 그러나 아직까지 비닐하우스 또는 컨테이너박스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열악한 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숙소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기숙사 등 주거환경에 대하여 어떠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의 구조, 설비 및 설치 장소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96호, 2019. 1. 15.,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인 위원 구성 및 위촉·임명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상 식품접객업에 대한 허가·신고 권한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므로,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시·도지사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책임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소비자와 배달음식업체 간 통신판매를 증대하는 배달앱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로부터 식품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